천안시산림조합 공고 제2019-14호

천안시산림조합 정관 일부개정정관 공고

2019. 12. 27.

SJ천안시산림조합

천안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

1. 개정이유

자산취득 자금형성 과정에 기여한 출자자에 대하여 경영자의 이익환원 의사결정 등 자율권을 확대하고, 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잉여금 추가 적립조항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임의적립금 추가 적립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(안 제31조)

천안시산림조합정관 일부개정정관

천안시산림조합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1조(임의적립금)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잉여금에서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30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□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이유
제31조(임의적립금) ①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잉여금에서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30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. ② 본조합은 고정자산 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서 당해자산의 처분에 따른 제비용과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, 제30조에 따른 이월금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임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한다.	제31조(임의적립금) 본조합은 매회계연도 잉여금에서 제29조에 따른 법정적립금과 제30조에 따른 이월금을 빼고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남은 금액의 100분의20 이상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.	○기업회계기준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산처분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잉여금 추가 적립조항을 삭제하고자 함